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1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다O종합건설	포항시 북구	942014610000334	다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14610000335	다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엠O도장	포항시 북구	942024610001240	엠OO항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24610001241	엠OO항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24610001242	엠OO항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24610001243	엠OO항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4610001244	엠OO항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4610001245	엠OO항50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4610001246	엠OO항50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4610001247	엠OO항50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영OO65 산악회	영주시 가흥동	942018610000412	삼육OO주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18610000413	삼육OO주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18610000414	삼육OO주 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18610000415	삼육OO주 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장O식	봉화군 봉화읍	942012610003111	만OO성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12610003112	만OO성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942012610003113	만OO성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8			942012610003114	만OO성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9	전O우	경산시 사정동	942025610000139	종OO산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0			942025610000140	종OO산502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3분기이상)	
21			942025610000141	종OO산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5610000142	종OO산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942025610000143	종OO산50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조OO고 디자인	대구시 동구	942023610005113	조OO전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23610005114	조OO전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항보O술	포항시 남구	412014600000069	500금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7			492022600000380	재난해상 500금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6. 6. 22.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